

외국인 학생 관리 규정

2018년 08월 2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함) 외국인 학생의 입학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 학생” 이라 함은 국적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외국인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학칙과 제반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관리조직) 외국인 학생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학생 담당교수와 담당직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 및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학생의 학사 및 생활 관리
3. 기타 외국인 학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① 외국인 학생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학생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 박사원과정 주임교수, 외국인 학생 담당교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 학생의 입학 자격 여부
2. 외국인 학생의 장학금 수혜 여부
3. 외국인 학생의 기숙사 수용 여부
4. 기타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6조(입학정원) 외국인 학생의 입학정원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

제7조(지원과정) 외국인 학생은 본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정원의 과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영어과정과 한국어과정으로 구분한다. 단, 영어과정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신학전공, 석박사통합 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자격) ① 외국인 학생의 학력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

② 영어과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국적인 자
2.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한 자
3.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시험 성적 보유자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TOEFL 530점 이상 또는 CBT 197점 이상 또는 iBT-71점 이상인 자

나. IELTS 5.5 이상인 자

다. CEFT B2 이상인 자

라. TEPS 600점 이상인 자

4. 제3호의 공인영어시험에 상응하는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 보유자
5. 제1 ~ 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학교 자체 영어능력평가에 합격한 자

③ 한국어과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과정을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취소) ①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자라도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졸업예정 자격으로 입학이 허가된 외국인 학생이 졸업보류 등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외국인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장학금

제12조(지급대상) 본교 목회학석사(M. Div.)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으로 학사학위과정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이고 만 35세 이하인 자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전액 및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본교가 소속된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선교지 목회자 양성에 대한 본교의 철학에 부합하는 지원자
2.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자 중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입학이 허가된 자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자 중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13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기숙사의 생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교에서 시행하는 영성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학교 외부에서의 활동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수학 기간 동안 가족이 장기 체류하는 경우(단, 장학위원회에서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5. 매 학기 평점 3.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4장 기숙사

제14조(신청대상) ① 외국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 입실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액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
2. 부분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자
3.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외국인 학생 중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자

② 기숙사 입실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숙사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전액장학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기숙사에 입실하는 경우 기숙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15조(퇴실) 기숙사에 입실한 외국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 조치된다.

1. 기숙사의 생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학 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체류하는 경우

제5장 학생관리

제16조(학적관리) 외국인 학생의 휴학, 복학 또는 제적 등 학적관리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에 따른다.

제17조(학적변동 보고) 외국인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제적, 자퇴, 졸업, 행방불명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근로신고) ①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 취업(단시간 근로 포함)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일 이전에 담당직원을 경유하여 출입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한 사항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외국인 학생이 제1항의 신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외국인 학생 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
2.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
3. 외국인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4.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제20조(운영세칙)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